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6. 9. 30.>

통신판매업 ☐ 휴업 ☐ 폐업 ☐ 영업재개 **신고서**
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기간 3일		
신고인	상호				신고번호		
	소재지				전화번호		
	대표자의 성명 (서명 또는 인)				생년월일		
신고 항목	기간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
	휴업						
	폐업						
	영업재개						
사유							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([]휴업 []폐업 []영업재개)를 신고합니다.

의
고
고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※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첨부서류	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(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) ※ 폐업신고의 경우에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